

증인은 뉴질랜드 형사 사법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 매우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범인이 범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증인은 본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근에 심리적인 도움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기관들이 있다. 인근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피해자 정보 라인 (0800 650 654)으로 전화하여 알아본다.

이 안내서 끝 부분에 있는 '주요 문의처' 및 '용어설명'을 참조한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

뉴질랜드의 범죄 피해자에게는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어린이나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도 피해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 본인 관련 법정 사건의 진행 과정, 그리고 법정에 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에 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또한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법정에서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나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족 그룹 회의에 참석해 범죄자 처벌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말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이름 비공개, 보석, 가택 연금이나 가석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원직원, 경찰, 사건과 관련된 타인으로부터 예의를 갖춘 성의있고 정중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와 대우에 관한 추가 정보는 피해자 현장(Victims Code)을 참조한다. 본 웹사이트(victimsinfo.govt.nz)에는 이러한 정보 외에 기타 유용한 정보가 들어 있다.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서비스가 수준 이하라고 생각되면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www.victimsinfo.govt.nz을 방문하거나 피해자 정보 라인(0800 650 654)으로 전화한다.

사건 수사

범죄가 신고되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배정된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누구와 이야기 해야 할지 설명해 준다.

담당 경찰관은 또한 신변 안전 문제, 그리고 이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

인터뷰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능한 빨리 증인과 면담을 해 진술서를 작성한다. 인터뷰 방법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이 설명해 준다.

진술 내용은 동영상으로 녹화되거나 서면화 될 수 있다. 작성된 진술서의 사본을 본인에게 준다.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더라도 법정에 증인으로 서면 다시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증인 자신의 말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터뷰 전에 가족, 친척 또는 타인에게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접관은 한 번의 인터뷰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추가 인터뷰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수사하는 동안 경찰은 다른 증인들과도 이야기 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증거가 충분하면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죄 행위로 그를 기소한다.

보석

용의자가 체포되었더라도 그 사람은 법정에 출두할 때까지 석방될 수 있다. 이것을 보석이라 부른다. 때때로 그 사람의 거주지에 관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통행금지 조건이 부여될 수 있다. 용의자가 피해자나 지역사회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경찰은 용의자가 법정에 출두할 때까지 그를 구금할 수 있고, 용의자는 법정 출두 시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

증인이 중범죄 피해자일 경우에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용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묻고, 용의자가 보석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준다 (중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안내서 끝부분의 '용어설명' 참조).

또한 신고 후에 범죄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한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등록부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기 원하는지 증인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증인이 17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좀더 알아보기 원하면 victimsinfo.govt.nz에서 다른 소책자나 안내서를 참조한다.

피해자 영향 진술서

증인이 범죄 피해자일 경우에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작성하기 원하는지 묻는다. 이는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법원에 이야기하는 진술서다. 사건 담당 경찰관, 피해자 지원단체 또는 다른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수사를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용의자를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증인의 신고 내용을 불신한다는 뜻은 아니다.

증인의 지원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증인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피해자 정보라인(0800 650 654)으로 전화해 인근에 개인 지원기관이 있는지 알아본다. 피해자 지원단체(0800 842 846)에 문의해도 된다. 이 단체는 검찰 측의 모든 증인 및 증인의 지원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담당 경찰관

증인은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언제라도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법원 피해자 자문관

증인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고가 법정에서 처음 출두하게 될 때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 증인에게 연락을 취한다.

법원 피해자 자문관은 증인에게 사건의 진행 과정과 향후 해야 할 일에 관해 설명해 준다. 심리적인 도움과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관해서도 설명해 준다. 피해자를 위한 법원 서비스(Court services for victims) 안내서를 보면 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원 피해자 자문관과 통화하려면 법원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피해자 정보 라인 0800 650 654를 이용하면 된다.

연소자 증인을 위한 참고 자료

연소자 증인은 사법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표, 포스터, 도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인근 법원의 피해자 자문관에게 문의한다.

정부 기관에 적용되는 지침

연소자 증인 및 연소자 증인의 지원인을 도와 주는 정부 기관에는 일정 지침이 적용된다. 이 지침을 보기 원하면 victimsinfo.govt.nz을 참조한다.

재정 지원

중범죄 피해자(중범죄의 정의는 안내서 끝부분의 '용어설명' 참조)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재정 지원은 범죄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원하면 victimsinfo.govt.nz을 참조하거나 피해자 지원단체 (0800 842 846)로 문의한다.

증인의 법정 출석 비용은 해당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법원 피해자 자문관에게 요청한다.

법정 내에서

피고(범죄로 기소된 사람)는 법정에서 몇 차례 출두해야 할 경우가 흔하다. 유죄 시인(guilty)이나 무죄 주장(not guilty)을 하기 위한 법정, 판사가 사건의 증거를 심리하는 법정 등에 출두해야 한다.

피고가 유죄를 시인하면 당일에 선고를 하거나 선고 공판 일자를 확정한다. 그럴 경우에는 증인은 더 이상 증언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면 이 사건은 공판에 회부되고 증인은 공판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증인의 역할' 참조).

연소자 증인을 위한 법원 교육

법원 사건의 처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할 수 있다. TV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연소자가 증언을 해야 할 경우 연소자 증인을 위한 법원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성인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모든 연소자 증인(피고인은 제외)에게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을 받으려면 연소자 증인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람이 법원의 피해자 자문관에게 연락하여 요청한다.

연소자 증인을 위한 법원 교육을 요청하면 관련된 사건의 법원 심리가 있기 약 3 주 전에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 관련인에게 연락을 한다. 법원 피해자 자문관은 본인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법정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며, 누가 어디에 앉게 되며, 누가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는지 설명해 준다. 또한 법정 내부를 구경시켜 줄 수도 있다.

일근의 법원 피해자 자문관과 통화하려면 피해자 정보 라인 0800 650 654를 이용한다.

청소년 범죄

어린이나 청소년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는 청소년 사법 절차를 따르게 되므로 사건 심리의 모든 과정이 다르다. 가족 그룹 회의라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증인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 가족 그룹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 법정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가족 그룹 회의 및 법정에 지원인과 함께 참석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가족복지부의 청소년 사법 조정관이 사건 처리 절차는 어떠하며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일부 청소년 중범죄의 경우에는 사건을 일반 성인 법정으로 바로 회부한다.

증인의 역할

증인은 법정의 사건 심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이 열리기 전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야 할 경우, 담당 경찰관이나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 언제, 어느 법정에 출두하라고 말해 준다. 공식적인 증인 출두 요청서도 집으로 배달된다.

사건의 법원 심리가 있기 전에 담당 경찰관은 증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상기할 수 있도록 인터뷰 녹화 동영상을 보여 준다. 담당 경찰관은 또한 증인이 하게 될 증언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청각 장애, 기동 장애, 언어 장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담당 경찰관, 법원 피해자 자문관 또는 개인 지원인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증언

담당 경찰관이나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 증인, 증인의 가족 및 친척을 법원 청사 내외에서 만나도록 주선할 수 있다. 이들은 증인이 피고나 피고 지원인을 만나지 않도록 별도의 대기실로 안내한다. 하지만 이들을 법원 청사 내외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다.

법정에 들어가면 증인에게 질문을 한다. 어떤 일이 있었으며, 범죄에 관해 아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다.

증언을 하기 전에 진실을 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약속은 서약(종교적 형태의 약속) 또는 일반 약속(비종교적 형태의 약속)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증인의 첫 인터뷰가 녹화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동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된다. 그 다음 증인은 검찰 및 피고 변호사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된다. 판사도 증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언론은 연소자 증인의 이름이나 증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증인의 안전이 중요하다. 법정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될 경우 언제라도 경찰관이나 법원 안전 담당관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증언 방법 선택

증언을 할 때 부모, 보호자 또는 지원인이 옆에 앉아 있도록 할 수 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용 증언, 스크린 뒤쪽에서 증언, 또는 스크린 없이 증언.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용 증언.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방에서 동영상을 통해 증언을 할 수 있다. 화면을 통해 판사를 볼 수 있고 각 변호사가 질문을 할 때 변호사도 볼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사람은 전혀 볼 수 없다.



스크린 뒤쪽에서 증언. 법정에서 증언할 때 증인 앞에 스크린을 설치해 증인이 피고를 직접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증인이 법정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다.



스크린 없이 증언. 법정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증인석에서 증언을 할 수 있다.

판결 및 선고

공판이 끝날 무렵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배심원들의 의견이 나뉘어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또 한번의 공판이 있을 수 있다). 피고에게 무죄가 결정되었다라도 증언이 허위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법과 증거에 근거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무죄로 인정되면 피고는 무죄 선고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된다. 이와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증인, 증인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나 지원인과 이야기를 나눈다.

피고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당일 선고를 하거나 선고 공판 일자를 확정한다.

항소

검찰과 범죄자는 둘 다 판결 및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는 상급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검찰은 향후 절차에 관해 증인에게 알려 준다.

선고

판사가 범죄자에 대한 선고를 할 때는 유사 범죄에 관한 이전의 판례, 범죄자에 관한 보고서 및 피해자 영향 진술서 등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판사가 동의하면 증인, 증인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영향 진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낭독할 수 있다.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나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증인을 대신해 판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재판 후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는 징역, 지역사회봉사, 벌금 등 다양한 선고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통지 등록부

증인이 중범죄 피해자인 경우, 증인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피해자 통지 등록부에 인적사항을 등록해 해당 사건의 사법 절차 진행 정도, 범죄자의 일시적인 출옥, 범죄자의 가석방 등에 관한 정보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증인이 17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담당 경찰관이 이 절차에 관해 증인에게 설명해 준다. 피해자 통지 등록제도에 의한 통보를 받으려면 등록된 인적사항이 반드시 최신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주요 문의처

형사 사법절차의 어떤 단계에 있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범죄 피해자 본인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의 연락처가 있다.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는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피해자 정보 라인(0800 650 654)을 이용해 문의하거나 victimsinfo.govt.nz을 참조한다.

ACC

acc.co.nz

0800 101 996 클레임 헬프라인

0800 735 566 민감 사안 헬프라인(성폭력 피해자용)

법원 피해자 자문관

0800 650 654(피해자 정보라인)

교정부

04 460 3000

corrections.govt.nz

뉴질랜드 가석방 위원회

0800 PAROLE(727 653)

paroleboard.govt.nz

개인 지원 기관

victiminfo.govt.nz을 참조하거나, 전화번호부의 개인 지원 서비스(personal help service) 난 참조

경찰

police.govt.nz에서 인근 경찰서를 찾거나, 전화번호부 맨 앞쪽 청색페이지 참조

피해자 지원단체

0800 VICTIM (842 846), 1일 24시간 운영

www.victimsupport.org.nz

여성 피난소

0800 REFUGE(733 843), 1일 24시간 운영

womensrefuge.org.nz

랭귀지 라인 통역 서비스

0800 656 656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2시

용어 설명

보석(Bail)

경찰이 향후 법정 출두 조건으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석방하는 행위.

법원 피해자 자문관(Court victim advisor)

피해자에게 법원 절차 및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는 법무부 공무원.

피고(Defendant)

범죄로 기소된 사람.

살인(Homicide)

어떤 사람이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

범죄자(Offender)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고'라 부른다.)

가석방(Parole)

범죄자가 출옥을 허락 받아 지역사회에서 남은 복역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일정 조건이 부여된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범죄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 복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피해자가 의견을 말하고, 이를 통해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제도. 이를 위해 주선되는 모임을 회복적 사법 회의라 부른다.

중범죄(Serious crime)

- 성폭력이나 기타 강력 폭행죄.
- 중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범죄.
- 피해자 본인 및 직계 가족 중 어느 누구의 신변 안전에 위험이 커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범죄.

피해자 통지 등록부(Victim Notification Register)

형사 사법 기관에서 사용하는 비밀 목록으로 이를 이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해당 사건의 사법절차 진행 정도, 범죄자의 일시적인 출옥, 범죄자의 가석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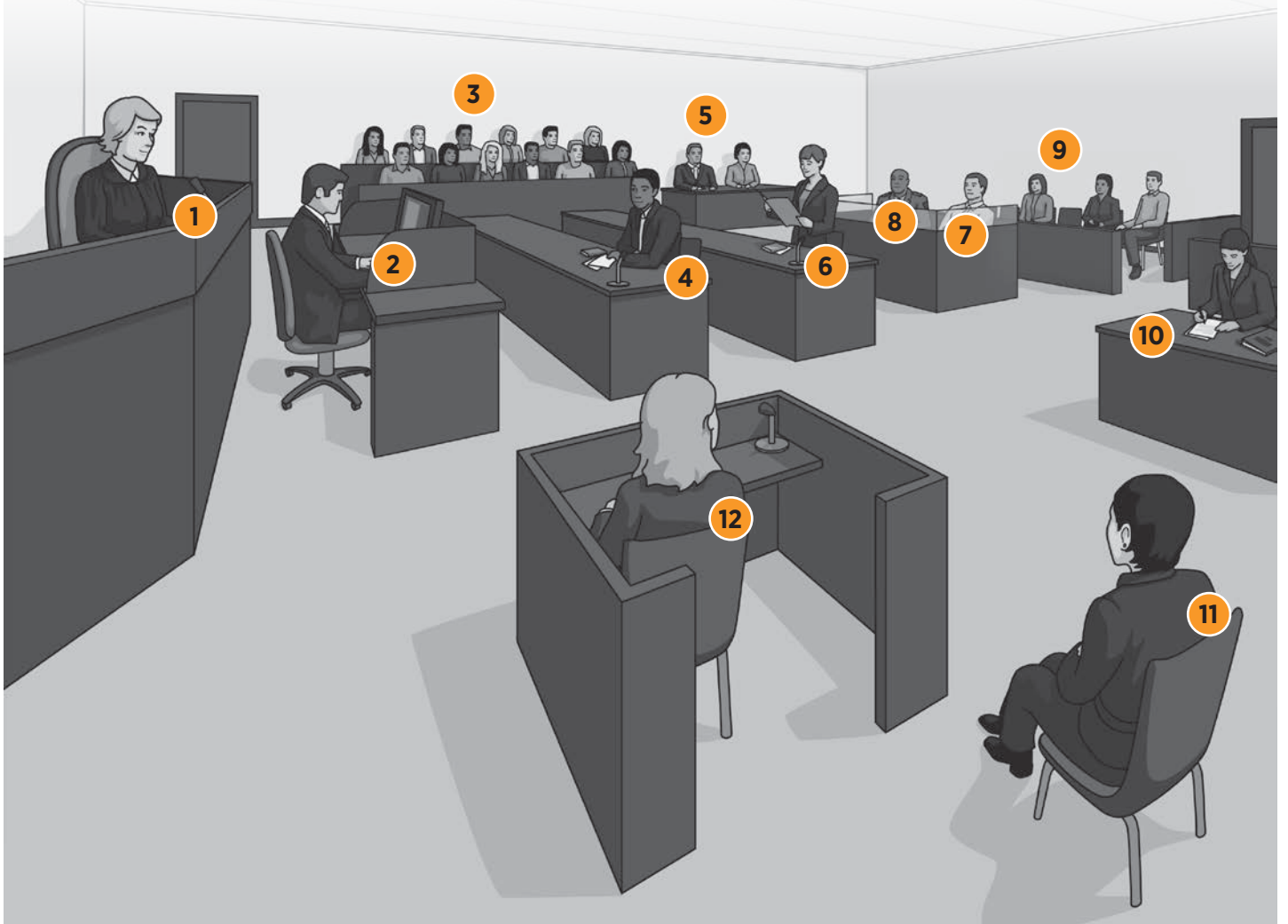
담당 경찰관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인적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피해자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술서이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지만 사진, 도면, 시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판사는 범죄자 선고 시에 이 진술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는 법정에서 선고 전에 이 진술서를 낭독할 수 있다.

법정 내부

이 도형은 법정 배치의 한 예이며,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1. **판사**는 재판을 주관한다.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배심원이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이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2. **법원 서기**는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3. **배심원**은 12명으로 구성되며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4. **검찰**은 국가를 대신해 피고를 상대로 하여 논고를 한다.
5. **언론**은 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다.
6. **피고 변호사**는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사이다.
7. **피고**는 범죄로 인해 기소를 당한 사람이다.
8. **피고 호송인**은 피고를 법원까지 호송하는 사람이다.
9. **방청석**은 일반 대중, 피해자 가족 및 친척이 앉는 좌석이다. 증인이 증언을 마치고 돌아가 앉는 곳이기도 하다.
10. **법원 피해자 자문관**은 증인이 법원 절차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들이 법정에서 항상 배석하지는 않는다.
11. **증인 지원인**은 증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동행하는 사람으로 판사가 동의해야 참석할 수 있다.
12. **증인**은 사건 및 범죄에 관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다.